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출처 : 총리령 제1054호, 2013.12.19., 일부개정
(시행 2013.12.19)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 번의 신고로 식육 판매와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가공·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35조 및 별표 10)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에 작업장, 급수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건강진단서, 수질검

사성적서,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육만 판매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시설기준과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위생적인 식육의 가공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안 제46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퇴직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위생교육을 면제함.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9개월마다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수시로 세척하도록 하는 등 위생적인 식육의 가공·관리 등을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문

◎ 총리령 제105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제4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제49조제3항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6조제6호”를 “제46조제7호”로 한다.

:: 축산법령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판매업”을 각각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물판매업”을 각각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제3호파목”을 “제3호파목·제4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깨끗한 상태로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손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나누는 데 사용되는 장비, 작업대 및 그 밖에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되

는 시설 등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진열상자 및 전기냉장시설·전기냉동시설 등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칼같이·도마 및 기구 등을 70퍼센트 알코올 또는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 칼, 칼같이 등은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의3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식육판매업”을 각각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5호하목 중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판매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1)(가)3)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1)(바) 중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 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장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나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나)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기성 식육가공품을 소분·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

나.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양념육류 및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두어야 하며, 작업장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가목(2)(가)에 따라 작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는 경우에는 벽이나 층 대신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처리·가공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에 관한 규격등에 적합할 것

2)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할 것

라.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호가목을 준용한다.

사.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을 준용한다.

아.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축산법령

별표 11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염색염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식육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
2) 사용량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식육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축산법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식육가공품에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2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육가공품에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4) 식육가공품에 2) 및 3)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